

의안번호	제 94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1999. 8. 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개정이유

- 농지법에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개정,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함.

주요골자

가.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을 임대인 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농지관리에 관한 심의등을 공정하게 수행할수 있는자 로 개정(안 제4조).

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지법 제46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나. 입법예고 : 해당없음

다.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99.6.23.)결과 완화 또는 삭제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7조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8조에서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및 정수) 위원회는 시(이하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에 두되 명칭 및 위원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관할구역) 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시·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리개발위원회 및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리개발위원회 및 동정자문위원회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추천서에 기재한 사항을 검토한 후 읍·면·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농지관리위원회의명칭 및 정수

명 칭 \ 위 원 수	계	위원장 (시장,읍·면장)	농민대표위원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서산시동농지관리 위원회	23	1	17	5
대 산 읍 농지관리위원회	35	1	29	5
인 지 면 농지관리위원회	26	1	20	5
부 석 면 농지관리위원회	32	1	26	5
팔 봉 면 농지관리위원회	28	1	22	5
지 곡 면 농지관리위원회	27	1	21	5
성 연 면 농지관리위원회	27	1	21	5
음 암 면 농지관리위원회	33	1	27	5
운 산 면 농지관리위원회	35	1	29	5
해 미 면 농지관리위원회	33	1	27	5
고 북 면 농지관리위원회	35	1	29	5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위 사람을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리개발위원회

○○ 동정자문위원회

서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첨부 1]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사 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주소지,거주기간	19 ~ 19 (년)					
	⑤최 종 학 력	학교(졸업,중퇴)					
	⑥주 요 경 력						
	영 농 현 황	⑦ 소 유 농 지	(단위 : m ²)				
		전	답	과 수 원	계		
⑧임 차 농 지	(단위 : m ²)						
	전	답	과 수 원	계			
⑨영 농 경 력	19 ~ 19 (년)						
⑩주 재 배 작 물							

[별지 제2호 서식]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축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시(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별표1중 “재산가액의 5/100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의 5/100이상”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녹지의점용허가)①(생략)		제4조(녹지의점용허가)①(개정안과같음)	
1~4.(생략)		1~4.(개정안과 같음)	
②시장 또는 군수는----- -----.		②시장은----- -----.	
1~3.(생략)		1~3.(개정안과 같음)	
③(생략)		③(개정안과 같음)	
[별표1] 점 용 료		[별표1] 점 용 료	
점용대상	점 용 료	점용대상	점 용 료
1. (생략)	• 재산가액의 5/100이상	1.(개정안과같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의 5/100이상
2. (")	• " "	2(")	• " " "
3. (")	• " "	3(")	• " " "
4. (")	• " "	4(")	• " " "
5. (")	• (생략)	5(")	(개정안과 같음)
6. (")	• 재산가액의 5/100이상	6(")	•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의 5/100이상